
Policy and Law Report _Vol.14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7.25.~ 2022.07.31.) -

August 2,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함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분야의 규제가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등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입지/금융 등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pre> graph TD A["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 경제부총리, 김종석 교수)"] --- B["경제규제심의기구"] B --- C["총괄반"] B --- D["현장애로 해소반"] B --- E["신산업 규제반"] B --- F["보건·의료 규제반"] B --- G["환경 규제반"] B --- H["입지 규제반"] B --- I["금융 규제반 (추가)"] </pre> 향후 계획으로는 ① 규제 소관 부처 책임下 50개 규제혁신과제 신속 이행 -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금번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 - TF 內 작업반에서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월2회) 총괄, 현장애로, 신산업, 환경 (월1회+정기 토론회) 보건의료 (수시) 입지, 금융 - 필요시, 작업반별 과제 추진현황을 TF 안건으로 상정·발표 ② 경제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경제 규제혁신 TF - TF 內 7개 작업반 -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 지속 발굴 - 기업, 협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연구기관(KDI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시장수요가 큰 과제 발굴에 집중 - 특히, 기업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과제를 추가 발굴해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 TF 총괄반을 중심으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개선도 본격 추진 * 경제단체, 협회, 중기부 등 규제 수요부처를 통해 인증·그림자 규제 과제 발굴 중	2022-07-28

부처	내용	일시
	③ 국민 관심이 높은 핵심 과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도 조속히 도출 - 국민 관심도가 높으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필요성 지속 검토 -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 ※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 - 8월중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추진 (잠정)	
국토 교통부	•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함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주요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내용으로는 ① (민간공급 활성화)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② (도심·역세권 공급)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③ (사업속도 제고)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④ (정주여건 개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 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 ⑤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	2022-07-24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힘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①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추진 예정 첫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 -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 지원 * (기존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둘째,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 -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 추진 * 국비 지원 : 250억 / 기금 지원 :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용자 **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 특례 셋째,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넷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 -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 < 주체별 역할 > <table><tr><th>구 분</th><th>역 할</th></tr><tr><td>지자체</td><td>후보지 제공(현물출자), 인·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td></tr><tr><td>민간</td><td>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시공·운영 등 전반을 주관 (AMC 담당)</td></tr><tr><td>기금</td><td>사업추진 전반의 과정 지원, 기금 출·용자 및 공공성 등 검증</td></tr></table> 다섯째,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 여섯째,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 - 사업특성·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체 및 자문기구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구 분	역 할	지자체	후보지 제공(현물출자), 인·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	민간	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시공·운영 등 전반을 주관 (AMC 담당)	기금	사업추진 전반의 과정 지원, 기금 출·용자 및 공공성 등 검증	2022-07-27
	구 분	역 할								
지자체	후보지 제공(현물출자), 인·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									
민간	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시공·운영 등 전반을 주관 (AMC 담당)									
기금	사업추진 전반의 과정 지원, 기금 출·용자 및 공공성 등 검증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보고함 이번 혁신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여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됨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① 신기술에 특화된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 ② 개발부터 허가, 수출까지 속도감 있는 전주기 규제지원 체계로 전환 ③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체계 상시 운영	2022-07-28
금융 감독원	•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코스닥기업이 많아지면서 일부 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 확산됨에 따라 이에 투자자들이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무상증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함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으로는 ①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② 무상증자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음 ③ 유보율(잉여금 합계÷자본금)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임 ④ 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전에 권리락 발생 ⑤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	2022-07-25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8.1. 시행)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 이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의류와 그 부속품의 경우 종전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022-07-27
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7.19 시행, 다만 제34조의 2 규정은 2022.10.15. 시행 예정)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 이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간 제조·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화학물질의 물용해도가 1 mg/l 미만이거나 화학물질을 중간체**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화학물질 **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2022-07-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7.28. 시행) 영업자가 위탁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검사 결과 '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공포, 7. 28.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의 보고 절차,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 및 최종 확인검사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회수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7-2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및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이 중요하므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공급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7/29(금)~9/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로 제출	2022-07-29
환경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의견 제시기간 : 7/29(금)~9/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로 제출	2022-07-2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 (안 제15조제3항) ②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 (안 별표 1) –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 ※ 의견 제시기간 : 7/29(금)~9/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	2022-07-29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확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신청자도 증가하면서 청약업무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서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되어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령안을 제안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안 제7조의2) –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분양현장에 청약신청자가 폭증되는 경우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에 차질이 생겨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이에 대해 청약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되, 10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7/28(목)~9/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로 제출	2022-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시('22.6.29 시행)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지식서비스업의 업종의 범위와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규정 (안 제10조제5항) - 지식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으로 설정하고, 면제요건을 동업종(13개)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한정 *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 의견 제시기간 : 7/26(화)~8/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로 제출	2022-07-26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법률 제1896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이에 따라, 인정 제외대상 및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양성분 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신설 등) ※ 의견 제시기간 : 7/25(월)~9/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로 제출	2022-07-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기금 투자 상품의 당일설정·환매 허용 (안 제77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제255조제1항제3호 신설) -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 (안 제80조제1항)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③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 (안 제81조제3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④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 (안 제88조) -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하고, 단위형 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 수령시 성과 산정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⑤ 자산운용 책임성이 강화된 펀드의 소규모펀드 공시의무 완화 (안 제93조제3항) -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⑥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 (안 제118조의16제3항)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2022-07-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안 제209조제1호 신설 및 제211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하면서,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펀드 등록시 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⑧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안 제209조) -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⑨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 (안 제217조 단서 신설 및 제229조제1항 단서 신설) -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⑩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 (안 제80조 및 제241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⑪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 (안 제243조제3항) -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⑫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확대 (안 제271조의20) -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집행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정책적 목적(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간접투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완화 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 (안 제304조) -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 근거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7/25(월)~8/5(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 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 금리의 금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지는 측면 이 있으며,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금융배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해외에서는 제한이율 초과 시 이자 전부에 관한 청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금리 금 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 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 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며,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종계약을 하는 행위를 방지 하여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조제4항·제5항 신설, 제3조, 제5조, 제8조제2항 신설)	2022- 07-27
정무 위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 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 금리의 금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지는 측 면이 있으며,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금융배제를 넘어 사회 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지난 2020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음.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 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림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2022- 07-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8조, 제9조의3, 제19조 등)	
정무 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들은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제한적임 또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대한 추정만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다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안 제30조의2제3항·제4항 신설, 제69조)	2022-07-27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비에 대하여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 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의 결정부터 양산까지의 과정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며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2-07-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숙박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과 생계에 곤란함을 겪어 온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업 종사자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7조의4 신설)	2022-07-26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2022-07-2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전자가위: 특정 유전자가 있는 DNA 서열을 삭제, 삽입 또는 수정하여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 (안 제7조의3 신설)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 등은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들었거나,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였으나 최종 산물에 그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②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 (안 제9조제1항제3호) - 시험·연구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억제내성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중에서 동물과 식물을 제외한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③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신고 (안 제22조의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을 할 때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2022-07-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격리실험구역에서의 환경방출실험 (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실험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된 격리실험구역에서 실험하도록 함 * 격리실험구역: 환경 방출실험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주변 자연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장소 ** 환경 방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	
국토교통 위원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 투자기구로서, 최근 몇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그런데,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강화하여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등 (안 제3조제4항,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제30조, 제37조 등)	2022-07-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②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안 제9조의2, 제49조의3제2항) ③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리츠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배당 기준액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도록 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배당을 및 이익준비금 적립의 예외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며, 리츠공모시스템 개선 및 청약정보를 확대함 (안 제14조의8, 제21조제1항제1호 신설, 제28조) ④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안 제23조, 제41조) ⑤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 (안 제4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u>」 현행법 제34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 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규정이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오피스텔 등 지원시설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의 지원시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하며,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64조, 제21조의8제3항, 제64조제6항)	2022-07-28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8/2(화) 14:00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8/2(화) 15:00	국가전략정보포털 관련 업무 협력방안 논의	
	8/3(수)	World & Law -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어떻게 지원하지?	
입법조사처	8/5(금)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별첨1] 제398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8/1(월) 10:00	전체회의	법안 심사
기재위	8/1(월) 10:0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등
교육위	8/2(화) 10:0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외통위	8/1(월) 10:0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현안보고
국방위	8/1(월) 10:0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업무보고
행안위	8/1(월) 10:00	전체회의	경찰청장 후보자(윤희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농해수위	8/1(월) 10:00	전체회의	업무현황보고
국토위	8/1(월) 10:0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복지위	8/2(화) 09:3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현안보고
환노위	8/3(수) 10:00	전체회의	업무보고
	8/4(목) 14:00	전체회의	업무보고
정보위	8/2(화) 10:00	전체회의	업무보고
여가위	8/2(화) 10:30	전체회의	미정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화) 12:00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대선과 지방선거 반성과 교훈	강준현·고영인· 권인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장
8/4(목) 10:00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 첫 번째 순서 '골목상권 편의점'	최승재 의원실, 전국편의점협의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8/4(목) 14: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5(금) 10:00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조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4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7/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9호 발간 -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7/28(목)	「현안, 외국에선?」 발간 -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입법조사처	7/27(수)	「NABO 경제동향」 7월호 발간 - 소비, 투자, 대외거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생산·고용·인구, 금융·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동향 분석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5(월) 10:00	<u>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u> -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조응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5(월) 14:00	<u>인앱 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u>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조승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장
7/27(수) 10:00	<u>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u>	윤창현·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7(수) 14:00	<u>AEROSPACE 발전세미나</u> - 뉴 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	하영제·신원식 의원실, (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8(목) 10:00	<u>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u>	박홍근·이현승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8(목) 10:00	<u>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u> - 감독체계개편 및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이용우 의원실, 금융소비자학회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